#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077

발의연월일: 2024. 10. 30.

발 의 자: 우재준 · 임종득 · 조지연

김선교 · 강대식 · 이상휘

구자근 • 주호영 • 김장겸

김소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재정이 꼭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왔음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복수급 문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반복수급 횟수별로 최대 100분의 60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자 함 (안 제46조 의2, 제49조, 제77조의3 및 제77조의8)

아울러 취업 곤란 등의 이유로 의도하지 않게 이직과 구직급여 수 급을 반복한 취업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일용근로자, 저임금근로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다양한 취업취약계층을 반복수급 제한의 예외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6조의2(구직급여일액의 감액) ① 근로자,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지급받은 후 다시 구직급여를지급받는 경우에는 제46조, 제77조의3제4항 및 제77조의8제5항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60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 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하고 그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 2.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으로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 여를 지급받은 경우
  - 3.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 4.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당시 수급자격자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
- 5.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당시 수급자격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 6. 제50조(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 기초일액 수 준, 이직사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9조제2항 중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 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 유가 제43조의2제2항 단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시작하여" 를 "시작하여 각 호의 사유별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기기간이 가장 긴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본다.
- 1.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경우로서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제43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46조의2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9조의6 중 "제49조"를 "제49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9조의9제1항 전단 중 "제49조까지"를 "제49조까지(제49조제2항제2호 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77조의3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46조의2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7조의8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46조의2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직급여일액의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구직급여는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46조의2(구직급여일액의 감액)
	① 근로자,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자격과
	<u>관련된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u>
	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46조, 제77조의3제4
	항 및 제77조의8제5항에도 불구
	하고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6
	0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받
	은 횟수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한 금
	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는 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
	급받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
	<u>다.</u>
	1.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
	상을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하
	고 그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 2.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 상을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 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으로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 3.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 상을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지급받은 경우
- 4.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 직일 당시 수급자격자가 「장 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 장애인인 경우
- 5.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 직일 당시 수급자격자가 「한 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 5조의2에 따라 지원 대상이되는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 6. 제50조(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49조(대기기간) ①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 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 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가장 나중에 상실 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 유가 제43조의2제2항 단서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 작하여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 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
의 비율, 기초일액 수준, 이직
사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제49조(대기기간) ① (현행과 같
<u>이</u>
② <u>다</u>
음 각 호의 어느 하나
<u>д</u>
작하여 각 호의 사유별로
<u>이 경우 다음 각 호의</u>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대기기간이 가장 긴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본다.
1.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
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한 경우로서 가장 나
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
련된 이직사유가 제43조의2제

# <신 설>

제69조의6(소정급여일수) 자영업
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
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제49조에 따른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
다.

제69조의9(준용)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 2,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 기, 제56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부터 제68조 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2조제1항・제43조제3항 중 "이 직"은 "폐업"으로 보고, 제43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 및 제6호"는 "제69조의3"으로 보며, 제63조제1항 중 "제46조"는 "제69조

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6조의2에 따른 구직급여
일액의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9조의6(소정급여일수)
제49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u> </u>
제69조의9(준용) ①
<u>제49조까지</u>
(제49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의5"로 보고, 제48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은 "제69조의6"으 로 본다.

② (생략)

-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지대한 구직급여) ① ~ ⑤ (생략)
  - ⑥ 예술인은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의 사유별로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아니하며, 각호의 사유중둘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대기기간이 가장 긴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본다.
  - 1.·2. (생략) <신설>

 ⑦・⑧ (생 략)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 조

<b>.</b>
② (현행과 같음)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 ⑤ (현행
과 같음)
6
1. • 2. (현행과 같음)
3. 제46조의2에 따른 구직급여
일액의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
<u>경우</u>
⑦·⑧ (현행과 같음)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

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 ⑤ (생 략)

⑥ 노무제공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유별로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각 호의 사유 중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기기간이 가장 긴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본다.

1.·2. (생략) <신설>

(7)·⑧ (생 략)

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 ⑤
(현행과 같음)
6
1.•2. (현행과 같음)
3. 제46조의2에 따른 구직급여
일액의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
<u>경우</u>

⑦·⑧ (현행과 같음)